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2022. 5. 26.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5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22. 5. 26.(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 5. 26.(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2건. 끝.

보 도 자 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부분, ②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본문 중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부분, ③ 위 부당노동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같은 법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에 관한 부분, ④ 같은 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2. 5. 26.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 1.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의 대항세력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그 대항세력이 기업별 노조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구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1.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6. 16.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19. 2. 15. 기각되었다.
-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25. 제청신청과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 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이라 한다)와 ②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라 한다) 부분, ③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④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하

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약칭하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이 아닌 이상 연혁에 관계없이 모두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주문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부분,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지배·개입’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지배·개입행위의 특징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은 ‘지배·개입’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범자인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학설,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하여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므로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입법자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을 택하였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행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일정수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과 같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조전임자를 둘러싼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예방되고, 근로시간 중 근로자의 조합활동이 감소하여 경영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운영비 원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용자의 기업의 자유의 제한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인하여 상당히 완화되는 반면에,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와 산업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처벌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형사처벌로써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노동조합법 제82조, 제84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후적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는 불완전하다. 원상회복주의를 취할 경우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행할 여지가 있고, 특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로 충분할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형벌이라는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및 근로자의 근로3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 경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실현에 기여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 이 사건 처벌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

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초래되는 사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양벌조항의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벌조항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 특히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하였는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와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보도자료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016헌마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투자확대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제협력사업자가 제기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2022. 5. 26.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고도 한다)에서 상업시설 신축 및 분양, 임대 등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7. 6. 2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상업업무용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토지이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이용권’이라 한다)을 분양받고, 개성공단 부동산 개발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및 영업소 설치 승인을 각 얻어 이 사건 토지이용권을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근린생활 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시설에 관한 설계비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 2010. 3. 26.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장관은 2010. 5. 24.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미 개성공업지구 내에 토지 이용권을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건축공사의 착공과 이를 위한 자재의 반입을 사실상 억제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위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0. 5. 24.자 대북조치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투자확대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이하 ‘이 사건 대북조치’라 한다)로 인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6. 26. 2000헌마 509등 참조).

2. 이 사건 대북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대북조치는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설비, 생산물품 등에 직접 공용부담을 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대북조치가 개성공단에서의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를 불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 참조).

3.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이 사건 대북조치에 대한 보상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대북조치로 인한 토지이용권의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대북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그렇다면 헌법 해석상으로 보상입법 의무가 도출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북한에 대한 투자는 그 본질상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재산상 손실의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 어떠한 보상입법의 의무가 도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 참조),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경제협력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밖에도 남북 당국의 조치로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투자기업의 국내 이전이나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선고한 2016헌마364 결정에서는 대통령이 2016. 2. 10.경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016. 2. 11.까지 남측 인원 전원을 철수시킨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 이 사건은 그보다 전에 이루어진 2010. 5. 24.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개성공단에 서의 신규투자 불허 및 투자확대 금지 조치에 대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하여 경제협력사업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하였다.